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  
제1차 정무위원회

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청년특별회의 개최 의무화〉

■ 강명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5483호)

2026. 3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명호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| 1 |
|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| 1 |
| III. 검토의견: 청년특별회의 개최 의무화 ..... | 2 |



## 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강명구의원 등 14인
2. 제 안 일 : 2025. 12. 22.
3. 회 부 일 : 2025. 12. 23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세대는 학생, 취업준비생,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,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·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현행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·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,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「청년기본법」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.

이에 「청년기본법」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,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3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: 청년특별회의 개최 의무화

-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년분야 전문가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3 신설).

| 현행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설> | 제15조의3(청년특별회의의 개최)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.<br>② 청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·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
-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청소년<sup>1)</sup>의 정책 참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소속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일정 비율을 청소년으로 위촉<sup>2)</sup>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<sup>3)</sup>하고 있음.

1)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(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).

2) 「**청소년 기본법**」 제10조(청소년정책위원회)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.

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1. 재정경제부차관

2. - 14. (생략)

15.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16.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

3) 「**청소년 기본법**」 제12조(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)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·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참고로, 2024년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<sup>4)</sup>는 총 107명으로 구성<sup>5)</sup>되었는데, 연초에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을 선발하여 1년간 정책발굴 활동을 전개하였음.

□ 반면, 「청년기본법」은 청년<sup>6)</sup>의 정책 참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<sup>7)</sup>를 설치하고,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부에 전문위원회<sup>8)</sup>를 두어 분야별로 청년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,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·도지사가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위촉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<sup>9)</sup>

4)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로서, 2005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25년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,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함(성평등가족부 청소년참여포털(www.youth.go.kr) / 청소년참여기구 / 청소년특별회의).

5) 2024년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(「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」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, 2024. 12.)

(단위: 명)

| 전체  | 성별 |    | 연령별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|----|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| 남  | 여  | 만9~15세 | 만16~18세 | 만19~24세 |
| 107 | 47 | 60 | 30     | 38      | 39      |

※ 67명 해촉, 최종 활동자 40명

6)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(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).

7) 「청년기본법」 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3.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4. - 7. (생략)

※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현황(2026. 1. 기준): 정부위원 20명, 민간위원 20명(부위원장 공석, 청년위원 11명, 청년정책전문가 6명, 임기만료에 따른 공석 2명)

8) 「청년기본법」 제13조(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16조(전문위원회)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일자리 분야
2. 교육 분야
3. 주거 분야
4. 생활 분야
5. 참여·권리 분야
6.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하고는 있지만, ‘청소년특별회의’와 같이 다수의 정책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□ 개정안은 청년분야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 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청년이 범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과제를 직접 설정·추진 및 점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청년특별회의는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, 청년특별회의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목적·기능, 회의개최 방법, 참석자 범위 등에 있어 기존 제도와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.

□ 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(6개분야 \* 10명 = 60명, 70%를 청년으로 구성)를 2026년 3월 발족할 계획이고, 동 전문위원회에서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할 예정이며,

- 
- 9)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 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위원회(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청년보좌역·2030청년자문단<sup>10)</sup> 등 다수의 청년참여제도를 운영  
중이므로, 별도로 청년특별회의를 신설하는 것은 기능 중복 등을  
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113 |

---

10)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1명(채용절차 진행 중)을 비롯하여 20명 내외의 2030청년 자문단을 운영하여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함(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).